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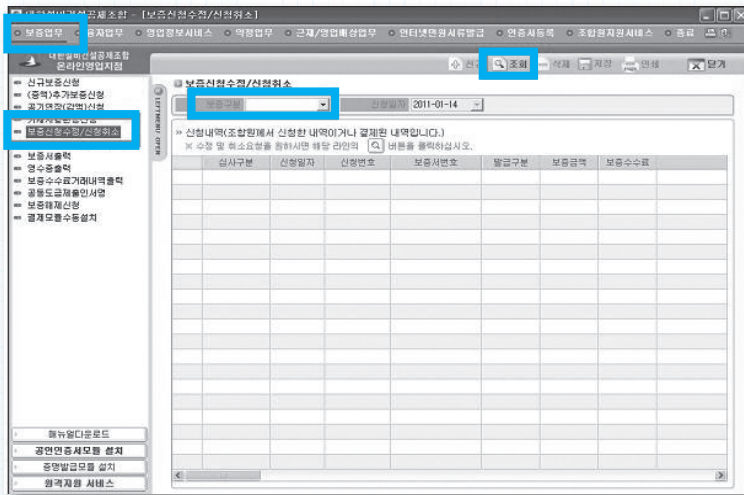
조합업무 안내(1)


인터넷을 이용한 약정 · 보증 · 융자 · 공제업무 이용 ②

1-1. 보증의 신청 오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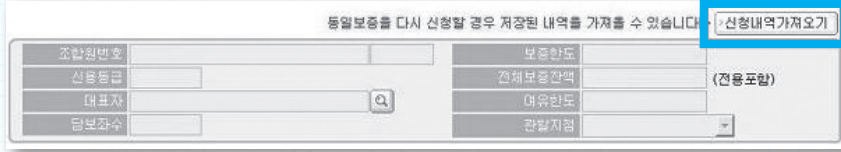
가. 입력 오류가 있는 경우

- 당일 신청한 보증에 대하여 지점에서 승인이 되기 전까지 신청내역을 수정 또는 취소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 보증서 출력 전 당일 신청하신 보증이 지점에서 승인되었을 경우 거래지점에 승인취소를 요청하시면 보증 신청 내용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만일 금액을 잘못 입력하여 보증서를 발급했다면 기 발급된 보증서를 취소한 후 신규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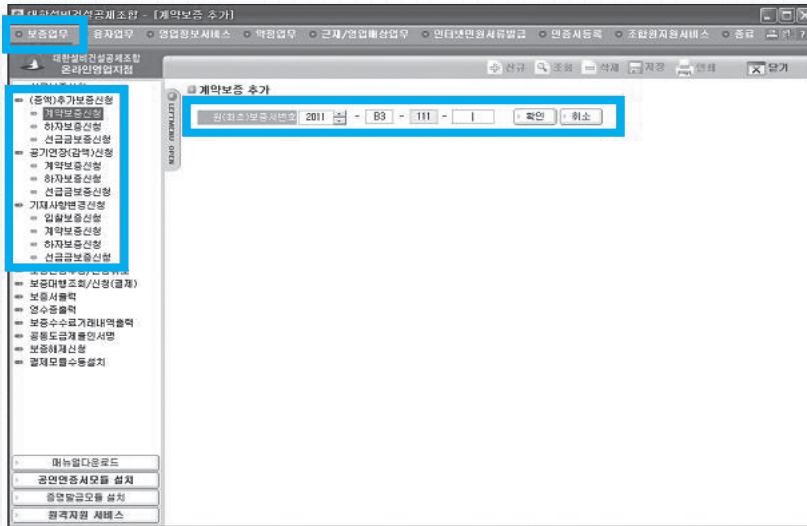
- 보증업무→보증신청수정/신청취소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 보증구분에 해당 보증을 선택 후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 아래 신청내역 중 해당보증 앞의  버튼을 클릭 후 해당 보증신청화면으로 이동하면 보증신청 내용을 수정 후 저장합니다.
- ※ 수정 후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 신청시 결제오류가 발생되어 재결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보증신청수정/신청취소 메뉴를 이용하지 마시고, 보증신청 화면을 다시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보증신청화면 상단에 있는 [신청내역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보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보증금액이 증액/공사기간 연장 및 감액/기재사항 변경

- (증액)추가보증신청 :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계약금액 증액 등으로 보증금액이 늘어날 경우 신청합니다.
- 공기연장(감액)신청 :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공사기간의 변동과 보증금액이 감소할 경우 신청합니다.
- 기재사항변경신청 :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보증 내역 중(보증금액제외) 공사명 등 변경시 신청합니다.



- 보증업무 → (증액)추가보증신청을 클릭하면 위의 화면이 나타납니다.
- 보증서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보증서가 취소 또는 해제된 보증서일 경우 “취소 또는 해제된 보증서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보여집니다.
- 보증서 번호가 없을 경우 “보증서 번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할지점으로 문의하십시오”라는 메시지가 보여집니다.
- 보증서 번호가 있으면 해당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해당 사항(보증금액 및 계약금액 증액분, 변경계약일)을 입력 후 저장버튼을 클릭합니다.
- ※ <공기연장(감액)신청, 기재사항변경신청>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증신청을 하면 됩니다.

1-2. 보증의 해제

- 미해제 보증이 있는 경우 아래 두가지 방법에 의하여 해제할 수 있으며 보증이 해제되면 해제된 보증금액만큼 보증여유한도가 늘어납니다.
- 첫째 : 보증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서류 등을 거래지점으로 송부해 주시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보증 별	해 제 사 유
계약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채권자의 준공확인서 또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때 • 조합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때 •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공사 기성실적확인서에 의거 그 준공을 확인할 수 있을 때 • 다른 보증기관에서 하자보증서를 발급하고 준공된 사실을 확인한 때
하자보수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때 • 하자보수책임완료확인원을 제출한 때인턴트
선급금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급금정산확인서를 제출한 때 • 실적증명서 등에 의하여 준공금 지분을 확인한 때 • 당해계약에 대하여 조합 또는 타기관에서 하자보증서를 발급한 후 90일이 경과한 때 다만, 준공된 공사의 보증채권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는 30일이 경과한 때 •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공사 기성실적확인서에 의거 그 준공을 확인할 수 있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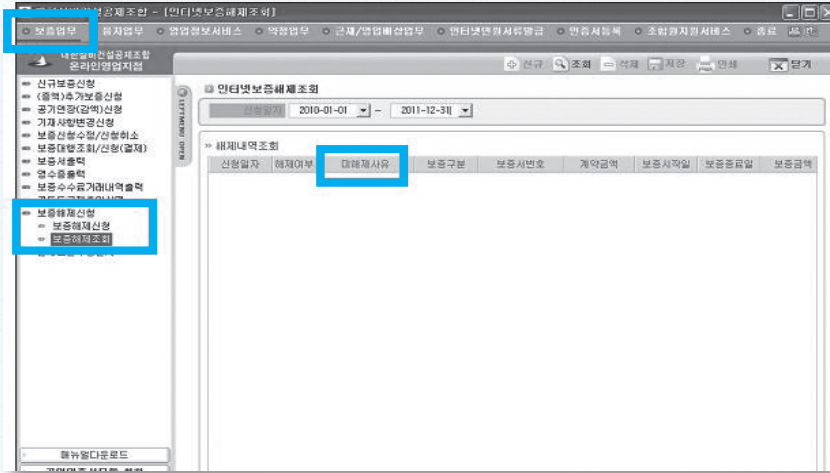
- 둘째 : 보증종료일이 15일 경과된 하자보수보증 및 보증종료일이 5년(2011년 11월 1일 이후 발급건은 2년)이상 경과된 계약 및 선급금보증은 온라인 지점에서 보증해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보증업무 → 보증해제신청을 클릭합니다.
- 해제여부에 체크한 후 저장버튼을 클릭합니다.
- 하단 신청자 정보란에 신청자명,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지점(영업소)에서 신청건에 대하여 해제처

리 완료 후 그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드립니다.

- 해제처리 완료 여부는 <보증업무 - 보증해제조회>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은 했지만 해제되지 않은 보증의 경우에는 [보증해제조회] 화면의 미해제사유에 그 사유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 [해제가능보증조회]에서 해제가능한 보증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1-3. 기사사항

가. 공동도급제출인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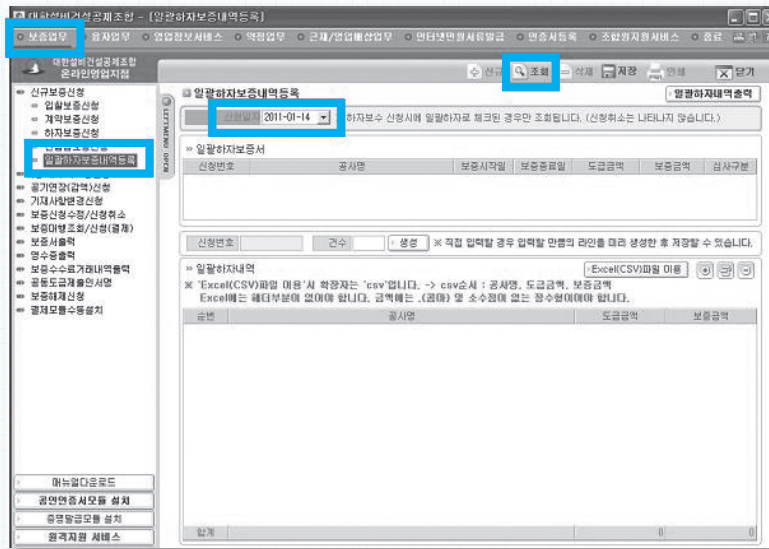
-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보증 신청 시 원거리에 위치한 업체의 경우에 확인서, 채무이행각서, 연대이행 확인서를 신속히 받기가 어려워 이를 해결하고자 인터넷으로 해당서류에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 공동도급계약에 대한 보증신청 시 지점에서 해당 내용을 등록하면 해당 업체에게 휴대폰으로 등록 번호 및 인증번호가 전송됩니다.



- 휴대폰으로 등록번호와 인증번호를 전송받으시면 <보증업무→공동도급제출인서명> 메뉴를 클릭합니다.
- 그 후 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인증번호를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서명합니다.
- 서류 종류를 선택 후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서류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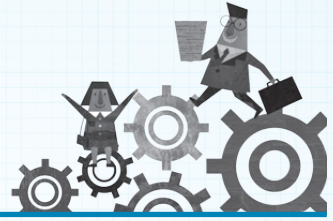
나. 일괄하자 등록

- 가스공급 등의 수요자별 하자보증신청 시에 여러 건에 대하여 한 장의 보증서로 발급신청하는 메뉴입니다.



- 보증업무 → 신규보증신청 → 일괄하자보증내역등록을 클릭합니다.
- 신청일자를 입력 후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 해당일자에 대하여 일괄하자로 신청된 내역이 화면 상단에 조회됩니다.
 - ※ 단, 보증신청화면의 일괄하자여부에 체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건수 입력 후 생성버튼을 클릭하면 건수만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 일괄하자의 도급금액의 합과 보증서의 도급금액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 ※ 여러 건일 경우 엑셀파일을 이용하여 입력 가능합니다. 이때 엑셀파일의 확장자는 CSV이고 공사명, 도급금액, 보증금액으로 정렬하여 저장되어 있어야 하며 금액란에 콤마(,)가 없어야 합니다. 🐼

	A	B	C
1	극동아파트 208동 101호	66000	3300
2	극동아파트 208동 102호	64000	6400
3			



조합업무 안내(2)

근로자재해공제 업무

가. 도입배경 및 근거

- 우리조합은 보증·용자에 국한된 사업에 치중하고 있어 조합의 경쟁력확보 및 조합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재해공제사업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근로자재해공제사업 도입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제1항제5호
 - 조합 정관 제47조 제1항
 -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

나. 정의

근로자재해공제는 조합원사에 고용된 근로자(일용직포함)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한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지급책임 범위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 하는 금액을 보상하여 주는 공제상품입니다.

* 대표이사(임원)은 보상범위에서 제외됨.

다. 운영구조

우리조합은 조합원에게 상품안내와 근재보험증권을 발급하고, 손해사정 및 보상처리는 업무제휴(동부화재,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주관사인 동부화재에서 수행합니다.

라. 조합원의 혜택

- 조합원의 금융비용이 절감됩니다.
 - 조합원사가 개별적으로 보험 가입할 때 보다 약 10% 상당의 보험료가 절감됩니다.
- 일원화된 조합 서비스(보증, 용자, 근재보험, 신용평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공으로 조합원에게 편의가 제고됩니다.

마. 가입대상

조합에 출자한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바. 발급범위

조합원이 영위하는 업종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면 전부 가입 가능합니다.

- 건설관련 공사(설치포함), 기계기구제작, 제조업, 서비스업 등이 해당됩니다.

사. 공제계약

(1) 계약의 종류

○ 공사장별 계약

- 공제계약자가 피공제자의 특정한 사업장에 대해 공제에 가입하는 계약으로 공사계약, 구간계약, 개별계약이라고도 합니다.

○ 연간포괄 계약

- 공제계약자가 피공제자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포괄하여 공제에 가입하는 계약으로 기간계약이라고도 합니다.

(2) 공제기간

○ 공사장별 계약

- 당해 사업장 건설공사(납품, 제조, 제작)등에 있어 공사(납품, 제조, 제작)기간을 기준으로 조합원이 청약한 기간을 공제기간으로 합니다.

○ 연간포괄 계약

-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원이 이와 다르게 청약한 경우에는 공제기간으로 합니다.

※ 공제기간은 청약일 이후에 개시됨을 원칙으로 함. 단, 조합원이 공제기간 개시일을 소급하여 청약하는 때에는 무사고확인원을 징구하고 공제기간 개시일을 소급할 수 있으며 공제기간 경과 후 공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같음.

(3) 공제가입 보상한도액

- 1인당 : 1천만원 ~ 5억원 이내

- 1사고당 : 1천만원 ~ 10억원 이내

: 공제가입 한도액 이내에서 조합원이 청약한 금액으로 함.

단, 공제가입 한도액을 초과하여 가입할 경우 보험사의 인수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 보상한도액은 공제기간 중 사고횟수와 관계없이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이 적용됨.

아. 공제료 구조

$$\text{공제료} = \text{인건비} \times \text{기본요율} \times \text{보상한도인상계수} \times \text{조정계수}$$

(1) 인건비

공제료 산정의 기초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수당, 상여금 등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 근로의 댓가로서 지급하는 일체의 금액(금품)을 말하며, 주로 사업체의 연간노무비 또는 공사장별 노무비를 말합니다.

○ 공사장별 계약

해당공사의 총 예정 인건비로 현장직만 산출대상이 되며 공사도급(하도급)계약서상의 공사비내역서 중 노무비 내역으로 합니다. 산출이 어렵거나, 제출이 곤란할 경우 계약금액중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아래 참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적용합니다.

※ 2014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적용기간 2014.1.1-2014.12.31)

- 일반건설공사인 경우 28% 적용
- 하도급공사인 경우 32% 적용

○ 연간포괄 계약

전체근로자의 연간포괄 총예정 인건비로 전년도 손익계산서상의 인건비와 공사(제조)원가명세서상의 노무비 내역이 산출대상이며, 사무직 인건비 산출은 손익계산서상의 인건비에서 임원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퇴직급여충당금 등은 제외하여 산출하고, 현장직인건비 산출은 공사원가명세서의 급여, 상여금, 잡급을 포함(퇴직급여제외)합니다.

※ 협력업체 및 하청업체를 포함하여 공제계약에 반영할 때에는 외주공사비에 고용노동부가 공시하는 하도급공사 노무비율로 산출한 금액을 현장직 인건비와 합산하여 산출함.

(2) 기본요율

근로자재해공제증권 발급시 사업의 종류별로 판매하는 기본적인 요율로 우리조합은 주관사인 동부화재와 업무협정에 의해 시중보험사 보험요율의 약 90% 수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3) 보상한도인상계수

1회의 사고발생으로 지급될 수 있는 1인당 · 1사고당 설정된 공제료의 한도액에 따라 적용되는 인상계수로 보상한도액에 따라 1에서부터 4.31까지 적용됩니다.

○ 보상한도 인상계수

(단위 : 백만원)

1인당 1사고당	10	20	30	50	8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10	1.00													
20	1.15	1.60												
30	1.26	1.71	1.97											
50	1.41	1.85	2.10	2.33										
80	1.54	1.96	2.20	2.41	2.51									
100	1.67	2.07	2.30	2.51	2.62	2.67								
150	1.82	2.20	2.43	2.63	2.75	2.80	2.88							
200	1.97	2.33	2.55	2.75	2.88	2.93	3.01	3.26						
250	2.11	2.46	2.67	2.87	3.00	3.05	3.13	3.35	3.37					
300	2.24	2.58	2.78	2.98	3.11	3.16	3.24	3.43	3.46	3.63				
400	2.41	2.72	2.91	3.09	3.21	3.26	3.33	3.51	3.54	3.69	3.71	3.83		
500	2.57	2.86	3.03	3.20	3.31	3.36	3.42	3.59	3.62	3.74	3.77	3.89	4.01	4.11
1,000	2.98	3.21	3.34	3.48	3.59	3.61	3.65	3.81	3.83	3.92	3.95	4.08	4.20	4.31

(4) 조정계수

계약자가 과거 일정기간 동안의 손해율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시키는 계수로 최저 0.4에서 최고 2.95까지 적용됩니다.

※ 원도급공사인 경우 조정계수는 공제계약자의 손해율을 적용하고, 하도급공사인 경우 조정계수는 원수급인(원도급자)의 손해율을 적용함. 또한 연간포괄계약인 경우 조정계수는 공제계약자의 손해율을 적용함.

※ 보상한도인상계수 및 조정계수는 보험개발원 자료를 적용하고 있음.

(5) 기타요율

○ 단기요율 : 연간포괄계약 체결시 1년이하 기준으로 계약시 적용하는 요율로 활용되며, 공제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해지시 공제로 환불에 사용하는 요율입니다.

○ 개별할인·할증율 : 보험사에서 산출하는 공제료가 50만원 초과시 적용하는 할인율로 사업의 종류별에 따라 최고 10% 할인율이 적용되고, 할증률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추가할인율 : 아래와 같이 추가할인을 적용하며, 추가할인의 총합은 6%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분	할인율	비고
계속계약할인	5%	갱신계약에 적용(연간포괄계약)
고액계약할인	1천만원 이상 5천만원미만 : 2%	손해보험사 단체보험료 1천만원 이상의 고액 계약에 차등적용
	5천만원 이상 1억원미만 : 4%	
	1억원 이상 : 6%	
연간포괄 계약할인	5%	공제기간 1년기준 연간포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공제료 분할납입 특약요율

연간포괄계약에 의해 산출된 공제료가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납입회수	할증계수	납입방법
2회납	1.02	할증계수를 적용한 공제료를 납입회수 및 비율에 따라 분할납입
4회납	1.03	

- 2회 분납 ⇒ 제1회 : 계약의 청약일(총 공제료의 60%해당액)
 제2회 : 청약일후 5개월이 되는 날(총 공제료의 40%해당액)
- 4회 분납 ⇒ 제1회 : 계약의 청약일(총공제료의 35%해당액)
 제2회 : 청약일후 2개월이 되는 날(총 공제료의 25%해당액)
 제3회 : 청약일후 5개월이 되는 날(총 공제료의 20%해당액)
 제4회 : 청약일후 8개월이 되는 날(총 공제료의 20%해당액)

자. 공제계약시 알아야 할 사항

구분	연간포괄계약	공사장별 계약	
		도급계약	하도급계약
필요서류	①임금산출자료 (손익계산서 및 공사(제조)원가명세서)	① (하)도급 계약서 ② 공사비내역서(노무비 확인)	
노무비 적용방법	손익계산서상의 급여+상여금, 공무원가 명세서상의 노무비를 인건비로 책정함 (인건비에는 임원급여, 퇴직급여, 퇴직급여 총담금은 제외하고 직접+간접 노무비에 잡급과 상여금 합산) 하도급업체까지 담보할 경우 외주 공사비의 32%를 노무비에 합산	공사비내역서상의 인건비 노무비는 직접+간접 노무비로 책정함. 단, 공사비내역서 미기재시는 건설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VAT제외)의 28%, 하도급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의 32%를 노무비로 책정(고용노동부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	
조정계수 적용	공제계약자	공제계약자의 조정계수 적용	원수급인의 조정계수 적용
피공제자 입력방법	공제계약자	공제계약자	공제계약자

차. 사업의 종류[예시표]

사업세목	내용예시
40001 건축건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 및 교량건설공사 ○ 건물건설공사 ○ 건축물 설비공사 ○ 전기, 전등, 전신기 등의 설비공사 ○ 송배전선로, 전기배선, 전화선로, 내온장치 등의 부설공사 ○ 급수, 급탕, 안전, 소화 등의 설비공사 ○ 난방, 냉방, 환기, 건조, 온습도조절 등의 설비공사 ○ 도장 공사 및 시멘트취부 방수공사 ○ 기타 건축물의 설비공사(가스설비, 공조시설, 공해방지 시설, 덕트, 배관설비, 자동제어, 태양열 설비, 펌프실, 환기장치, 냉각탑 보수, 분수대 설비, FRP, 보일러, 주방공사 등) ○ 내장, 유리, 온창, 조원 등의 기타 전문 제공사 ○ 교량건설공사(개보수공사, 선창의 건설공사)

사업세목	내용예시
40002 도로신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또는 광장의 신설공사 - 기설도로의 변경, 굴곡의 제거 및 확장공사 - 도로 및 광장의 포장공사(사리산포공사 포함) - 도로구조물공사, 교각 설치공사, 강교설치공사
40003 기계장치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기계기구장치를 위한 조립 및 부설공사 및 부대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 및 기구장치를 위한 기초처리공사, 기계대 공사 - 보일러, 기중기, 양중기등의 조립 및 부설공사 - 전기수진기, 공기압축기, 건조기, 각종운반기 조립 및 부설공사 - 석유정제장치, 펌프제조장치등과 같은 기계기구의 조립 및 부설공사 - 삭도 건설공사 - 화력 및 원자력발전시설, 변전소의 설치공사 및 수리공사 - 기계 및 기구의 설치공사 또는 해체공사 또는 수리공사 -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의 설치공사 - 화력, 원자력 및 수력발전소의 수리공사(단, 산세정공사 제외) -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공사 - 도시가스제조 및 공급설비공사 - 통신장비(컴퓨터 통신장비포함)의설치, 이전, 철거공사 - 주차설비(관제시스템)공사 및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공사 - 공장내 기계설치 공사
40101 고제방(댐)등 신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방의 기초지반(터파기 밑나비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최심부(기초지반의 최심부는 말뚝선단의 위치임, 다만, 잔교식공법의 경우는 제외)에서 그 정상까지의 높이가 20m 이상되는 제방 및 해안 또는 항만의 방파제, 암벽 등의 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공사장내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40102 수력발전시설 시설신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분야에서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 고제방(댐)신설공사 및 터널신설공사 등과 이 공사에 부대하여 당해공사 현장내에서 행하여 지는 공사
40103 터널신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널신설에 관한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는 내면설비공사 ○ 지반에서 10m 이상의 지하까지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사업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 굴착식으로 시공하는 지하철도 및 지하도신설공사와 이에다른 부대공사
40201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 또는 궤도 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는 공사(역사, 과선교, 송전 선로 공사) ○ 철골조, 철근조, 철근콘크리트조 등의 고가철도의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현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40202 고가 및 지하 철도신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반으로부터 10m이내의 지하에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또는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인입통신구)의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공사 현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구내에서 행하는 인입선공사, 증선공사와 철도, 궤도의 보수, 복구공사 포함) ※ 이 사업에서 신설이란 신설선의 건설, 단선을 복선으로 하는 경우 등 신설형태로 시공되는 것을 말한다.
40004 기타 건설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현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건설공사에 단순히 노무용역과 건설기술만을 제공하는 사업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력발전시설 및 댐시설 이외의 제방건설공사 - 기설터널의 보수 및 복구공사(개수, 복구공사) - 옹벽축조의 공사, 공작물의 해체, 이동, 제거 및 철거공사 - 하천의 제방도로, 제방수문, 갑문등의 신설개수에 관한 공사 - 해안 또는 항만의 방파제, 암벽등의 건설공사 - 비행장, 골프장, 경마장 또는 경기장의 조성에 관한 공사 - 지하에 구축하는 각종 물탱크의 건설공사(기초공사) - 침몰된 공작물의 인양공사 - 각종 운동장 스탠드 건설공사 - 철탑, 연돌(굴뚝), 풍동등의 건설공사 - 문, 담장, 축대, 정원등의 건설공사 - 송전선로, 통신선로 또는 철관의 건설공사 - 하수도관 세척공사 ○ 후각사업세목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타에 분류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반, 하천, 해면의 준설, 간척, 매립등의 공사 - 개간, 경지정리, 부지 또는 광장의 조성공사 - 수중오물 수거작업공사 - 방지벽 건설공사 - 광고탑, 탱크등의 건설공사 - 용광로 건설공사 - 기계장치 산세정공사 - 무대셋트 제작, 조립, 도색, 도배, 철거공사

사업세목	내용예시
22300 기계기구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 원동기, 농업용 기계기구, 특수산업용 기계기구, 금속가공기계, 건설기계 산기계, 설비품, 섬유기계, 가정용/사무용/서비스용 기계기구, 일반 산업용 기계기구, 동력용 전기기계기구,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기타 산업용 기계기구제조업
90601 각급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건설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본사, 지사, 출장소 등이 단순히 서무, 영업, 기획, 인사, 경리, 계약만을 행하는 경우 ○ 각종 도매, 소매업을 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 ○ 기타 서비스업종

카. 근로자재해 공제약관 중 중요한 사항

공제약관 중 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 제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한 번 이상은 읽어보시기 바라며, 기타 세부 사항은 공제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약관제6조(보상하는 손해)

- ① 조합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위의 손해금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③ 조합은 재해의 원인이 된 사실이 공제기간 중에 생긴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 약관제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조합은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은 재해로 인한 손해(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확대되지 않았을 손해를 포함합니다.)는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중에 생긴 손해.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합니다.
- ② 피공제자의 원수급인, 하도급인 및 그들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 그러나 공제계약을 맺을 때에 미리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공제료를 받았을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③ 피공제자가 아닌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
-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⑤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약관제9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약관제10조(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공제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조합 및


보험회사에 알리고 공제가입증서(공제 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을 맺을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②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 또는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③ 임금 등의 변동이 있을 때
 - ④ 위 1, 2 및 3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 ※ 기타 계약후 알릴 의무의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고시 상담 및 분쟁 조정

- 동부화재 콜센터 : 02-2262-2150 동부화재 기업보험1부
- 조합 업무부 : 02-6240-1031 ~ 7 공제담당자에게 연락

타. 공제계약시 주의사항

- ① 공제계약 청약시 공제계약자의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거나 대표이사가 자필서명을 해야 합니다.(인터넷 공제청약시 제외)
- ② 사업의 종류는 기본요율 산정시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업의 종류[예시표]를 참고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③ 공제계약시 공제기간 개시일을 소급하여 청약하는 때에는 무사고 확인원을 징구하고 공제기간의 개시일을 소급할 수 있습니다. 공제기간 경과 후 공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④ 공제기간 산정은 연간포괄계약인 경우 초일불산입으로 청약일 24시부터 개시되며 공제기간종료일 24시까지로 하고, 공사장별계약인 경우는 착공일(또는 청약일) 24시부터 준공일 24시까지로 합니다.(단 착공일이 선일자인 경우 공제기간 개시일을 선일자 전날로 할 수 있음)
- ⑤ 최초 보험가입을 타 보험사에서 하였을 경우, 이후 변경계약에 대하여 조합에서의 발급은 불가합니다.
- ⑥ 공사장별계약인 경우 도급(하도급)계약서상 준공기일에 30일 또는 60일등 보증기간 연장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면, 공제기간종료일(준공기일)에 연장기간을 합산하여 종료일을 산정합니다.
- ⑦ 공제로 분할납입업체는 기일 준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⑧ 공사명란은 최고 29자정도 입력이 가능하고, 공사명이 29자 이상인 경우는 추가기재사항란에 추가적으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 ⑨ 추가기재사항란은 공제계약자가 아래 2가지 사항 중 요구하는 경우 입력 가능합니다.
 - 1) 원수급업체(도급업체)가 2개사 이상인 경우
 - 2) 하도급공사인 경우 원수급인을 공동피공제자로 요구하는 경우
- ⑩ 공사장별계약시 도급(하도급) 계약서상 노무비(인건비)내역이 없을 경우 인건비(노무비)산정은 공사도급(하)계약서상의 계약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적용합니다. 

설비가족 의료검진 서비스 안내



▶ 서비스 내용

조합원사 직원들의 건강과 행복증진을 위하여 의료 종합검진 서비스를 단체 계약하여 조합원사 직원들께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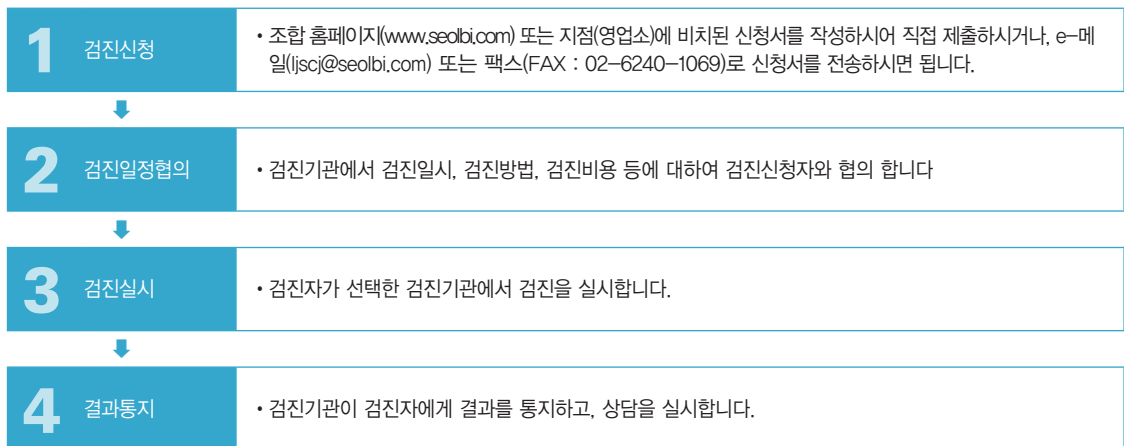
▶ 검진대상

- 조합원사 직원 및 그 가족 / 조합 및 협회 직원과 그 가족
- ※ 설비가족께서 추천하시는 모든 분이 검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검진비용

- 33만원 패키지(한신메디피아 / KMI / 하트스캔)
 - 기본검사 + 위내시경, 복부·특수초음파, 암 표지검사, 대장내시경 또는 CT
- 25만원 패키지(한신메디피아)
 - 기본검사 + 위내시경, 복부·특수초음파, 암 표지검사

▶ 서비스 흐름도



☎ 궁금한 사항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기획팀(02-6240-1063)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검진상품**

A. '안심 종합검진'

- 특징 : 특별히 의심되는 부분이 없을 경우 실시하는 일반적인 종합 검진으로 우리몸 전체를 검진합니다.
- 검진항목

구 분	내 용
기초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학적 검사(진찰, 체위) • 구강검사 / 심전도검사 / 폐기능검사 / 폐-X선 촬영 / 안저검사 • 소변검사(당뇨, 결석, 신장질환) • 혈액검사(간기능검사, B형·C형 간염검사, 심장기능 및 지질 검사, 췌장 및 혈당검사, 신장기능검사, 철결핍성질환, 빈혈 및 혈액질환검사, 류마티즘, 통풍검사, AIDS, 매독검사) • 골밀도 검사 / 체성분 검사 • 부인과 검사 / 유방암 검사
특화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내시경(위암, 십이지장의 암, 궤양) • 복부 초음파(간장, 신장, 담낭, 췌장, 비장) • 특수 초음파(갑상선, 전립선, 골반, 경동맥) • 암 표지검사(간암 및 간경화 등, 대장암 및 소화기암, 전립선암, 난소암) • 대장내시경 또는 CT(뇌, 폐, 허리, 목) 중 1개 선택

B. '선택 종합검진'

- 특징 : 기본적인 종합검진 항목과 본인이 원하는 검진항목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검진입니다.
- 검진항목

구 분	내 용	추가비용(원)
기초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학적 검사(진찰, 체위) • 체지방검사 / 심전도검사 / 폐기능검사 / 폐-X선 촬영 / 안저검사 • 소변검사(당뇨, 결석, 신장질환 등) • 혈액검사(간기능검사, B형·C형 간염검사, 심장기능 및 지질 검사, 췌장 및 혈당검사, 신장기능검사, 철결핍성질환, 류마티즘, AIDS, 매독검사) • 골밀도 검사 / 영양평가 • 부인과 검사 / 유방암 검사 	-
특화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내시경 또는 위 조영촬영(위암, 십이지장의 암, 궤양) • 복부 초음파(간장, 신장, 담낭, 췌장, 비장) • 특수 초음파(갑상선, 전립선, 자궁, 난소) • 뇌혈류초음파(뇌졸중, 뇌출혈, 뇌혈관협착의 조기진단 및 예방) • 암 표지검사(간암 및 간경화 등, 대장암 및 소화기암, 전립선암) 	-
선택검사 (택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장초음파(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기능장애) • 뇌 CT(뇌경색, 종양 등) • 흉부 CT(늑막 및 폐질환, 종격동 종괴 등) • 복부 CT(간질환, 담도계질환, 신장, 췌장, 비장 등의 암) • 척추 CT(척추디스크, 목디스크 및 요통 등) • 대장수면내시경(대장암, 대장용종, 대장염 등) • 조직검사(대장내시경검사상 용종 제거시 용종의 조직검사를 통한 종양 확진검사) • 뇌 MRI(뇌의 병변, 양성종양 등) • 척추 MRI(허리디스크, 허리종양 등)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100,000 30,000 250,000 250,000

▶ **검진 기관**

1. **한국의학연구소(KMI) 검진센터(www.kmi.or.kr)**

검진센터	주소
본원 검진센터(종로)	서울 종로구 당주동 100 세종빌딩
여의도 검진센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1 SK증권빌딩
강남 검진센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2-35 성담빌딩
수원 검진센터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8-2 세영빌딩
부산 검진센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 1422-8 국민연금빌딩
대구 검진센터	대구 남구 대명동 2010-1 남대구우체국보험회관
광주 검진센터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나은병원(인천가좌성모병원)	인천 서구 가좌3동 277-7
대전 둔산검진센터	대전 서구 둔산동 1119 메르하우젠

담당자 : 백광덕(Tel.02-739-2333 Fax.02-739-2339)

2. **한신메디피아(www.medikind.com)**

검진센터	주소	전화	FAX	담당자
본원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빌딩	02)588-1992	02)535-7556	원봉희

3. **하트스캔(www.heartscan.co.kr)**

검진센터	주소	전화	FAX	담당자
본원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2-1	02)564-3070	02)564-3010	신경일

※ 자세한 위치는 검진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궁금한 사항은 우리조합홈페이지(www.seolbi.com) 또는 기획조정실(02-6240-1063)로 문의해 주시고, 신청서는 기획조정실(FAX : 02-6240-1069, E-Mail : ljscj@naver.com)로 보내 주십시오.

※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은 의료 검진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